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신대경

전화 033-769-4302 / 팩스 033-769-4642

## 보도자료

2021. 3. 10.(수)

### 제목

# 원주 두 자녀 살해 사건 관련, 검사 청구로 부모 모두 친권상실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20. 4. 9. ‘원주 두 자녀 살해 사건’의 부모를 상대로 생존자인 장남(아동보호시설 보호중)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하였는바,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21. 3. 8. 친권상실을 선고하였음
- 해당 부모는 3남매 중 사망한 둘째, 셋째뿐만 아니라 장남에 대해서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고,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유기·방임하였는바, 이번 친권상실 선고가 확정될 경우 친권이 완전히 박탈됨

### 1 친권상실 제도

- 친권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, 자녀의 친족, 검사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

※ 민법 제924조, 아동복지법 제18조,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,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

- 친권상실 선고의 확정으로 당해 친권자의 친권을 박탈하는 효과 발생

- 사법연감에 따르면, 2017.~2019. 3년간 친권상실 청구는 연평균 약 180건, 그 중 약 100건 인용(일부 인용 포함)

## ② 원주 3남매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

- 검찰은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, 두 자녀에 대한 살인 등 범행으로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0. 4. 9. 유일한 생존자녀인 장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
  - 부모는 사망한 둘째, 셋째 외에 첫째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, 약 5개월간 비좁은 차량 안에서 숙박하거나 공중 화장실에서 찬물로 몸을 씻기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하여 유기·방임한 범죄사실로 1·2심 모두 유죄 선고
    - ※ 2021. 2. 3. 항소심에서父 징역 23년, 母 징역 6년 선고
  - 장남에 대한 긴급피해자지원 결과, 신장과 체중이 동년배의 하위 1%에 해당할 정도로 발육이 부진하고, 정서적 문제도 발견되는 등 해당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여 친권상실 청구
- 검사는 친권상실 재판 심문기일에 2회 직접 출석하여 친권상실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진술하였고, 법원은 검찰의 청구이유를 모두 받아들여 친권상실 선고(장남의 후견인으로 현재 보호중인 아동보호시설장 지정)

## ③ 검사의 민법상 권한 적극 행사

-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, 성범죄 등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법률상 책임과 권한을 적극 행사
  - ※ 현재 검찰은 「아동학대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」, 「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지침」 등 시행중
- 친권상실 청구 외에도 범죄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(민법 제9조) 등 민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능동적으로 행사하여 범죄피해자·아동 등 약자보호에 만전 ☑